

대 법 원
제 2 부
판 결

2013. 4. 25. 원본영수	인
2013. . . . 판결송달	

사 건 2013두2341 재심청구의 소
원고, 상고인 임그루
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
피고, 피상고인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소송수행자 길기수, 김평수, 서언준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
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대표이사 이석채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2재누172 판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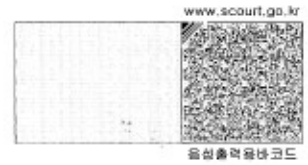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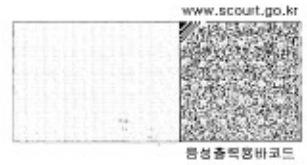



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3. 4. 25.

재판장	대법관	이상훈	이 상 훈 
	대법관	신영철	신 영 철 
	대법관	김용덕	김 용 덕 
주 심	대법관	김소영	김 소 영 



정본입니다.

2013. 4. 26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김광태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